[별지 제22호서식] <신설 2004.12.29>

위 임 장

사 건 번 호
대표당사자
피 고

위 사건에 관하여 보관 중인 분배금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의 법원보관금규칙상의 사건담임자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합니다.

1.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의 출급 및 공탁
2. 전호의 출급 및 공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

년 월 일

위임인(분배관리인) 성 명 (인)
주민등록번호
주 소
전화번호

첨 부 : 인감증명서